

7. 토지수용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909호 1999. 2. 8

개 정 이 유

타인의 토지출입허가권 등 일부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기간을 연장하며,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9조제1항).
- 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후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18조의2제2항).
- 다. 일단의 토지중 일부만이 공공사업에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기간을 종전에는 재결신청서의 열람기간내였으나 앞으로는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전까지는 변경함(법 제48조제1항).

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 ①기업자 공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주무부 장관이 기업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 군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 시, 군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구, 시, 군의 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 시, 군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관계도지사”를 “관계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구, 시, 군의 장 또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구, 시, 군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중 “제3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구, 시, 군의 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48조제1항 후단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를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로 한다.

제59조 및 제64조 본문중 “구, 시, 군의 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7조중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9조의2중 “10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한다.

제80조 본문중 “5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1조를 삭제하고, 제82조를 제81조로 하며,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
2.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평가의 의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4.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

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지의 수용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